

의안번호	2218982
의 퇴 인	김우영의원
회 답 일	2026. 6. 25.
추계번호	26B2653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및 평가지침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억 2,700만원(연평균 4,5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등)	5	5	5	5	5	27	5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7조)	75	—	—	75	—	150	30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안 제18조)	50	—	—	—	—	50	10
합계	130	5	5	80	5	227	45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기본계획·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1.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가 미디어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할 것 3.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4. 미디어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증진되고 문화의 다양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5. 청소년이 건전한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6.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국가 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항)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재량규정
3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1명, 성평등가족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2명 이내로 한다.(제3항) 위촉위원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 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제4항)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6명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명 위촉위원은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5항) 1. 미디어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미디어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공지능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4	안 제15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등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7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제5항)	의무규정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8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의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디어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20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21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제2항)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	
10	안 제22조(권한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8조(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다만,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 구성 여부 및 수, 소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 또한,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문위원·조사요원은 현행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력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유사사례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경우에도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인력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지원함
3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4	안 제15조(경비지원 및 보조)		
5	안 제17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다만, 제정안은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시행기관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하다는 의견임
6	안 제18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7	안 제19조(의견 청취)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8	안 제20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의 내용 및 규모,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r> <th>사업명</th> <th>사업개요</th> <th>'26</th> </tr> <tr> <td>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td> <td>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상시교육,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 미디어교육 등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미디어강사 양성및연수, 미디어교육연구등 </td> <td>1,183</td> </tr> </table>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명	사업개요	'26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상시교육,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 미디어교육 등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미디어강사 양성및연수, 미디어교육연구등	1,183
사업명	사업개요	'26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상시교육,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 미디어교육 등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미디어강사 양성및연수, 미디어교육연구등	1,183							
9	안 제21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의 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22조(권한의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등)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른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연직(공무원) 위원 10명, 위촉(민간) 위원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 위원 중 1명) 2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 10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 이내, 위촉 위원 9명(민간 전문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미디어교육위원회의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당연직 위원	10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
위촉 위원	9명	관련 단체, 학계 등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위원장 1명 포함)

자료: 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700만원(연평균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9	9	9	9	9	-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합 계(D=A×B×C, 백만원)	5	5	5	5	5	27	5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7조)

- 제정안에 따른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특정분야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4] 특정분야 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연구용역명	사업연도	예산
교육부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 기초연구	2023	70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4	80
평 균			75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1차 및 4차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

(연평균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75	-	-	75	-	150	3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른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지침(이하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수립 비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평가 체계·제도 관련 정책연구 용역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표 6] 평가 체계·제도 관련 정책연구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연구용역명	사업연도	연구비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환경변화 대응 및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송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24	60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2023	40
	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21	50
평 균			50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5,0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	50	-	-	-	-	50	1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기본계획·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현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 (사업 개요)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26)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청자미디어센터 상설 미디어교육 － 소외계층·지역 미디어교육 －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 유아 미디어교육 － 청소년 미디어교육	1,109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 미디어교육 연구 － 미디어교육 간행물	74
합 계				1,183